
입 법 정 보

2018-13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4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8
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8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5.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0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12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
1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3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4
14.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5.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4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5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5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6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16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7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8
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산림청).....	19
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19
25.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0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0
2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20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21
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21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3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4

3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25
34.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6
3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26
3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7
37.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8
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29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29
4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30
4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1
4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33
44.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4
4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35
4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35
48.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49.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7
5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37
5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39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39
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40
5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1
5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41
56.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1
5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42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4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5
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45

정부입법 예고

1.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7. 9.

• 마감일자 : 2018. 8. 17.

○ 2007년 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주소의 부여 등에 있어 도로와 건물의 주 출입구를 중심으로 하는 평면적 부여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로와 건물이 없는 산악·해안 등의 지역은 10미터를 최소 단위로 하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현대사회의 생활공간이 점차 공중과 지하로 넓어지고 도시 구조 및 건물도 입체화·대형화 되면서 입체 도로를 이용하여 건물의 상·하 층부로 직접 진입하거나, 건물 내부도 이동 경로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 위치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특히 도로명주소 및 국가지점번호 표기 지역 이외 장소에서의 국민 활동 증가로 해당 지역에 맞는 위치 표시가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위치 부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물류의 이동과 위치 찾기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하고, 안전사고 등에 따른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새만금 지역 등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입주 기업 등이 주소가 필요한 경우 신청에 의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도로 건설 및 건물 신축 등의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국민의 주소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도로명주소법」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찾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속한 도로명주소 결정 등을 위한 국민 신청 제도 마련

1) 도로 건설이 확정되는 단계부터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하여 도로명에 대한 폭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도로명 변경 등에 있어 변경 전 도로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심의 위원은 주민의 신청에 의해 제척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2) 그간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을 수 없는 지역 (예: 공유수면매립지 등)에서도 거주자 및 기업 등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과 상관없는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 3) 국외에 지번 또는 변경 전 도로명주소로 국내 주소를 등록하고 있는 국민 또는 수출입 기업의 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국내 도로명주소와 해외에 등록된 주소가 동일하다는 주소동일성 증명 신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43조)
- 4)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주소 부여·변경 등에 있어 임차인에게도 대위 신청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고,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건물 소유자 편의를 위해 모든 건축 행위 등을 위임받은 건축 설계자에도 대위 신청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44조)

나.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서의 신속한 구조·구급 활동 지원을 위한 위치안내 체계 확대

- 1) 건물이 없는 도로변(산악·해안 도로 및 지방국도 등)에서 쉽게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당도로변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사용한 안내표지를 부착하도록 함(안 제34조)
- 2) 지점번호 표기지역(산악·해안 등)에서 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지점번호 위치 측량을 현행 2회에서 1회 측량만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다. 공적장부 주소일괄 변경 처리로 주소변경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

- 1) 주민 신청 등으로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부여·변경되는 경우에 결정기관은 각종 공부의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기관에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 등을 통보함으로써 주소 정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19조)
- 2)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가 변경되는 건물의 소유자·임차인 등은 주소 현행화가 필요한 공부 외에 이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공부의 주소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기관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라. 미래도시에 대응하는 주소 부여 및 관리 체계 마련

- 1) 지상 및 지하 공간 등에 건설되는 입체도로와 대형 건물 내부도 이동경로를 따라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 2)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시설물·장소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위치에 맞는 정보안내 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제22조)

마. 임대건물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도모(안 제13조 및 제35조제3항 부터 제6항)

- 1) 임대목적 건물 신축 시에는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세주소(동·층·호)를 신청하도록 하고, 시·군·구청장이 임차인의 주소생활 편의 등 도로명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 경우에는 상세주소판을 설치하도록 함
- 2) 임대건물 소유자는 임차인의 상세주소 부여 등에 대한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경우 상세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

바.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 등의 지원 등

- 1)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주소정보를 사용하는 관련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해 주소표준 개발, 주소정보의 편집 및 가공, 분야별 맞춤형 안내시설 설치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 2) 각종 시설물, 장소, 지도 등에서 표기하는 위치 표시가 기관별로 달라 공동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기관별 정보를 제공받아 하나의 정형화·통일성 있는 위치표시로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 3) 도로명주소·기초구역 및 지점번호 등 이 법에 따라 부여·관리 하는 각종 주소정보 등의 관리·활용, 산업분야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

사.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

- 1) 지방자치단체는 연 1회 이상 주소정보 안내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안내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고, 안내시설 중 지점번호판·사물주소판은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함(안 제28조)
- 2) 주소정보시설이 각종 공사 등으로 훼손되거나 정비 등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도로시설물에 설치된 안내시설의 경우 도로시설물 정비에 따라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 기관에 공사 사실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및 제33조)
- 3) 건물번호판을 훼손 등에 따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받아 설치하거나, 자율형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아. 제도 운영을 위한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별 심의 사항 변경(안 제6조)
- 2) 도로명주소의 결정, 기초구역 설정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주소사용자 정보의 요청 근거 신설(안 제7조)
- 3) 건물번호·상세주소·사물주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하도록 함(안 제45조)
- 4)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해 사무의 일부를 위탁하도록 하고,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도록 함(안 제46조 및 제50조)
- 5) 명예도로명을 안내도에 표시하는 경우 도로구간을 함께 표시하고, 주소사용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도로명주소안내시설에는 명예도로명을 표기하지 않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 6) 벌칙 등이 부과되는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건물번호판을 직접 부착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 및 제53조)

자. 기타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한 용어의 순화 등

- 1) 아니한, 귀책사유로, 없는 한 등의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용어로 정비
- 2) 하여야, 아니하도록, 대하여는, 하였거나 등 일상적인 생활언어와

○ 주요내용

- 가.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에 따라 비료생산을 등록하거나 비료 수입업을 신고하는 경우 변경 신고에 대해 수리 간주 규정 도입 (제11조제5항·제6항, 제12조제3항·제4항 신설)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10. • 마감일자 : 2018. 8. 20.
-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의 등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로 고전원전기장치의 안전성 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검사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절차 등(안 제111조)
 - 등록관청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 운영·관리에 필수적인 서버 관련 사항과 사업자 신상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신청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 증명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
 -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선명령 사유(안 제115조)
 -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사업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추가 사유 명시
 - 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필수 제공정보(안 제144조의2 신설)
 - 거래 신뢰도 제고 및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자동차 전·후면 및 계기판 사진과 차량 등록 정보 13종을 의무적으로 제공

하도록 의무화

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의 기록보관(안 제144조의3 신설)

- 거래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거래기록을 전자문서로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

마. 전기자동차 검사기준 개선(안 별표 15, 안 별표 16, 안 별표 18)

- 고전원전기장치 절연저항 등을 확인 가능한 성능검사 신규도입 및 기존의 육안검사 강화, 검사원 교육·장비착용 의무화

5.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10.

● 마감일자 : 2018. 8. 20.

○ 법령마다 차종분류 체계가 상이하어 지자체 및 등록관청 등 일선 행정 업무처리 현장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법령 간 차종분류 기준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용자동차 분류체계 정비(안 별표 1)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종분류를 기준으로 등록규칙의 사업용 자동차 분류체계를 정비하여 법령 간 통일성 확보 및 업무편의 도모

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10.

● 마감일자 : 2018. 8. 20.

○ 기존 법령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구분 없이 모든 매매업에 전시시설 및 사무실 등 시설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전시시설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 중고차 매매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중고차 매매업(온라인 자동차 매매 정보제공)을 신설하고 시설규제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을 개정(법률 제 14950호, 2017. 10. 24. 공포, 2018. 10. 25. 시행)함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안 제13조)
- 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사업 개선명령을 할 경우 절차 및 기한 등을 명시
- 나.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안 제13조의4 신설)
- 온라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매매업에 부과되던 전시시설 등 불필요한 시설기준을 서버 최소용량 등으로 대체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가 이미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반드시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 명시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11.
- 마감일자 : 2018. 8. 20.

○ 주요내용

- 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정함(안 제5조의2)
- 나. 중앙모자의료센터는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평가, 교육훈련, 업무조정,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정함(별표 4)

8.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11.
- 마감일자 : 2018. 8. 24.

- 재난·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의 효율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근거 마련(안 제13조제5항)
- 공공주택 입주자의 입주포기 등에 따른 미임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나. 이재민 등의 긴급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사용(안 제23조의3)
 - 재난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통보한 자에게 공공 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경우의 사용기간, 임대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 운영지침 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센터)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 대상 민원을 접수·처리·교부 할 수 있도록 기존에 통일부 내부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신원사실관계확인서, 임대주택특약해지 확인서 등 총 4종의 민원서식을 행정규칙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1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현행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업 3년 이하 중소기업의 진입 규제를 폐지하여 창업 초기부터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요건중 업력 요건(3년 초과) 폐지
 - 1) 현행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은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으로 제한하고 있어 창업 초기기업의 인재육성 기업문화 조성에 한계가 있음
 - 2)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후 3년 초과 중소기업에서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3)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대상을 창업 초기(3년 이하) 기업까지 확대하게 됨에 따라 창업 초기 중소기업으로 인력 유입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11.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 후견인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의 요건을 규정(안 제11조 신설)

1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치매관리법」 개정(법률 제14896호, 2017. 9. 19. 공포, 2018. 9. 20. 시행)에 따라 치매노인에 대한 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후견인 후보자 추천 절차 및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대한 비용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1)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법인·단체의 장이 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4조 신설)
 - 2) 후견심판의 청구에 드는 비용, 후견인의 후견 활동에 드는 비용,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비용, 후견 지원과 감독에 드는 비용 일부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4조의2 신설)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18. 10. 1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금품 등을 제공한 건설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 기간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입찰참가 제한기간 신설 등(안 제98조의2 및 별표 5의2)
 - 나.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안 별표 6)

14. 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주요내용
 - 가.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 등에 드는 총비용’ 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비용 정보를 제공 (안 제31조의5 제1호 일부개정)
 - 나. 자격 관련 광고에 자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자격’, ‘공인자격’ 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제31조의5 제3호 신설)

15.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관계부처 합동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18.4.18 발표)에 따라, 자격관리자의 표시·광고 의무 및 자격운영 책임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자격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

○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 등록 시 자격관리자가 자격취득의 요건이 되는 교육훈련을 운영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신고 여부를 확인(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나. ‘응시자 본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포함하도록 개정(제2조제3항제4호 신설)

16.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 예고일자 : 2018. 7. 12. ● 마감일자 : 2018. 8. 21.

○ 국민 편의를 위해 우리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영문으로 기재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증 뒷면을 활용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문 운전면허증 서식을 신설함(안 제77조의2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 신설, 별지 제42호, 제42호의2, 제59호 제64호, 제65호서식 개정)

17.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13. ● 마감일자 : 2018. 8. 22.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를 연계하려는 국제사회의 추세에 대응하고,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측정하고 평가하여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제공과 증진으로 모든 국민이 널리 그 혜택을 누릴 필요가 있어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생태계서비스가 국토, 산업 등 각 분야의 정책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태계서비스의 개념 정의 및 기본원칙 신설(안 제2조 및 제3조)

1) 생태계서비스를 생태계가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 혜택으로 정의하고 공급, 조절, 문화, 자연유지 혜택으로 분류
- 2) 생태계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증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신설
- 나. 생태계서비스 측정 및 가치평가를 도입하고 관련 지원근거 신설 (안 제9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
- 1) 정부는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와 관련된 연구와 기술개발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생태계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함.

18.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13. • 마감일자 : 2018. 8. 23.
- 도로관리청이 원인자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91조 제5항 및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 제103조에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여 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도로공사가 원인자 비용 부담업무를 위임 대행하도록 관련 정보를 요청하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범위 규정(안 제100조 제2항)
 - 나.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업무대행 범위 규정(안 제103조 제1항)

1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

- 예고일자 : 2018. 7. 16. • 마감일자 : 2018. 8. 27.
-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준수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

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 시 법적 절차 규정(안 제24조의2 신설)
 - 1) 과거 남북교류협력의 제한 또는 금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2) 이에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시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한 사업 중단 시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3)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향후 법률에 근거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 나. 남북교류협력 제한·금지에 따른 남북한 방문, 반출·반입, 협력 사업 승인 취소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함.(안 제9조제7항제5호, 제13조제5항제8호, 제17조제4항제12호 신설)
- 다.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신고제를 합리화함.(안 제17조의2제2항 개정)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7. 16. ● 마감일자 : 2018. 8. 27.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종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 등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12호, 2018.4.17. 공포, 10.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17.
- 마감일자 : 2018. 8. 27.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2)

- 1) 전문기관 명칭,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소재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600만원(1차)~1,0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라목 의2 신설)
 -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미이행시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 2)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받은 사실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180만원(1차)~300만원(3차)의 과태료를 부과(별표 2 제2호 라목의3 신설)
 - * 시약판매업자가 시약구매자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

2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7. 17.
- 마감일자 : 2018. 8. 27.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 확대(안 제10조)

-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산림조합·공공기관·대학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일자리확대, 산촌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3.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7. 17. ● 마감일자 : 2018. 8. 27.
- 공동산림사업의 수행자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추가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추진에 따라 공동산림사업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 교환대상 토지 소유자인 제3자가 교환을 승낙하는 경우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함
- 주요내용
 - 가. 공동산림사업의 범위에 정원 및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추가(안 제14조)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1의2에 따른 정원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 가능토록 개정
 - 나. 교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22조제1항)
 - 1) 교환 승낙 시 본인 소유의 토지에 대한 교환 승낙만 가능하던 것을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토지에 대해서도 교환 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2) 소유자의 교환 승낙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을 최종 교환 계약체결 시까지 이전하지 못해 교환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가의 감정수수료 및 입목조사비용은 교환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단서 마련

2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송통신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7. 17. ● 마감일자 : 2018. 8. 28.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소상공인 등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대한 신고 간소화 등을 규정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8.10.18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신고 절차 등 그

시행에 관하여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5.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7. 17. • 마감일자 : 2018. 8. 27.
- 예술인 복지사업 관련, 국가전산망 이용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를 내용으로 예술인복지법이 개정('18.04.17)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금융정보 등의 정보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자료의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함.

2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7. 17. • 마감일자 : 2018. 7. 27.
-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방책을 설치하도록 하고,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업용 로봇 작업장의 안전보호장치 설치 기준 개선
 - 1)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는 작업장의 근로자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매트와 방책(FENCE)을 설치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레이저스캐너 등 기술발달로 개선 개발된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 적용이 저해
 - 2)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 대해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방책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방책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다양한 감응형 방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개선

27. 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

- 예고일자 : 2018. 7. 18. • 마감일자 : 2018. 8. 27.
- 지진 등 대규모 재난 시 구호물품 지급, 급식 등 구호 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구호지원기관 추가 지정을 통해 구호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현행 의연금품의 모집 및 배분내역을 모집자·배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시기·내용 등이 달라 한 곳에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의연금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현행 2개(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지원기관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기관(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새마을운동중앙회)을 구호지원기관으로 추가 명시(제1조의4 신설)

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연금품의 모집 허가·취소, 모집·배분·사용내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행정안전부 지정 홈페이지에 공개(제20조제2항 신설)

29.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7. 18. • 마감일자 : 2018. 8. 27.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장의 겸직을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종사자 배치를 융통성 있게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배치기준 개선(안 제18조제1항, 별표 2)

- 1) 시설장의 관련 시설 업무 겸임 완화
- 2) 청소년자립지원관은 행정원 또는 취사원 대신 자립지원요원을 추가적으로 배치

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6조제2항, 별지 제7호서식)

다. 청소년복지시설 휴업·폐업·운영재개 신고서 양식 보완(안 제17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서식 정비

29.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7. 18. • 마감일자 : 2018. 8. 27.

○ 2018.4.23. 노사정대표자 회의 합의의 후속조치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개편을 위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법 (舊. 경제사회발전노사정 위원회법)이 전부개정(2018.6.12. 공포, 법률 제15663호) 됨에 따라 인용문구 등을 정비하고, 법률로부터 위임된 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법령안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시행령’으로 개정

나. 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 공익위원 위촉대상 방식 규정(안 제2조)

- 기존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외,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 확대되는 참여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익위원 추천 시 순차배제방식 삭제에 따라 해당 규정 정비

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안 제5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추천 각 2인,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라. 의제개발 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0조)

- 의제개발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구성

마.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1조)

- 특별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설치하며,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바. 사회 각 계층 관련 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12조)

-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각 계층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대변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촉

사. 지역별 사회적 대화의 지원(안 제17조)

- 지역별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대화의제 검토, 조사 연구,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19.

• 마감일자 : 2018. 8. 28.

○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먼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배출부과금제 시행 중(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질소산화물의 경우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과금 대상 항목에서 제외되고 있어 질소산화물 대기배출부과금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 신설 및 염소 삭제(별표 5, 6, 8, 9)

- 1) 초과배출부과금과 기본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하여 오존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도록 함
- 2) 산업계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질소산화물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등을 먼지, 황산화물 등의 오염물질과 유사하게 설정하되, 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함
- 3)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 중 염소는 염화수소 형태로 배출되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항목에 염화수소 항목이 별도로 있으므로 염소 항목을 삭제함

나. 사업자가 거짓으로 제출한 배출량에 대한 조정방법 강화(별표 7)

- 1)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최대한 배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20% 가산하도록 함

다.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방법(제17조의2 신설)

- 1)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는 배출부과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보도록 함

3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29.
- 의료폐기물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하여 소각시설 용량 부족시에 대비한 대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유량·수위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의무를 명확히하여 매립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 마련(안 별표5)
 -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 한계로 처분되지 못하는 의료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하여 의료폐기물 이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를 허용함
 - 나.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관리강화(안 별표11 및 별표19)
 -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수위·유량 측정값의 기록·보존의무를 명확히 하고, 침출수 조사분석결과
 -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 함
 - 다. 유해물질의 재활용 제한(안 별표5)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형목탄의 사용연료로 이용가능한 폐목재만 성형탄으로 재활용을 허용 함 (접착제·페인트 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폐목재는 성형탄으로 재활용 금지)

3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29.
-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감염과 무관한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관의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객담·객혈이 의료폐기물해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없는 것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안 별표 2)

33.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29.

-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수익 한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 국가환경종합계획 내용 추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실효성 강화,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위탁규정 신설 등을 통해 법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확장(안 제4조)
나. 환경으로부터 제공되는 혜택을 누리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신설(안 제7조의2)
다. 물 관리 체계 조정에 따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추가(안 제15조제4호카목)
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환경계획 정비(안 제15조제4호가목,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58조제1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4항)
마. 국제협력 관련사업 위탁규정 신설(안 제27조제2항)
바.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협력 추진 근거 규정 마련(안 제27조의2)
사.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항 공표대상 및 공표방법 등 명확화(안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
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에 따라 관련 수입금 세입 반영 근거 마련 등(안 제46조제17호)

37.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29.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09호, '18. 3. 20. 공포, '18. 9. 21. 시행)됨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의 유형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전시설의 종류에 대한 정의 변경(안 제18조의5제1항)

1) 급속충전시설 및 완속충전시설의 정의 중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 등 별도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

2) '급속' 및 '완속' 을 충전기의 최대 충전 출력값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함.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정함(안 제18조의6)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단속 업무 및 과태료의 부과를 위한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추가(안 제20조)

라.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1조)

1) 각 충전 방해행위 유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외의 차가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2) 과태료를 경감 및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

3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29.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강화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회보장정보원의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업무운영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주요내용
 - 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 예외적 허용(안 제14조 개정)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보육 허용
 - 나.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종사하는 보육교사의 결격사유 규정(안 제26조의 2제6항 신설)
 -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시보육교사에 대하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동일한 결격사유 규정
 - 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의 범위 명확화(안 제51조의2 개정)
 - 정보공시 등 사회보장정보원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

39.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29.
- 공익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하여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의 상한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616호, 2018. 4. 17. 공포, 201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 및 행정사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고유식별정보 처리규정 정비(안 제29조)
 - 변호사 대리신고 관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변호사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상향조정(안 별표1의2)

- 모법의 이행강제금 및 벌칙 규정 강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비례적으로 상향 조정함

40.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7. 20.

● 마감일자 : 2018. 8. 30.

- 교육장 소속으로 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의 권한을 교육감에서 교육장에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 임명 및 위촉 권한 위임(안 제5조제8항)

- 1) 교육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권한을 현재 교육감에서 교육장으로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제고 기대

나. 교육환경평가서의 제출 및 승인여부 통보 권한 위임(안 제6조제1항)

- 1)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한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교육감 뿐만 아니라 교육장도 동 평가서를 제출받고, 승인여부를 통보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마련

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완화(안 제9조제7호)

-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안에 있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목폐기물의 파쇄·분쇄를 위한 시설은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

나. 물산업 실태조사(안 제5조)

- 환경부장관은 매년 또는 필요 시 물산업 국내외 시장 현황, 수주 및 매출 실적, 관련 연구·개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요청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다.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등(안 제6조)

- 기술의 연구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기술의 시장 동향 및 규모 등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수요조사의 내용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원 사항을 규정함

라.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안 제7조)

- 국제수준의 기술 및 제품에 대한 표준화 정보의 수집·분석·보급 등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마. 우수제품등의 지정 등(안 제8조)

- 환경부장관은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따라 성능이 확인된 제품·기술을 선정하여 3년간 우수제품등으로 지정(필요시 3년 이내 연장)하고, 우수제품등의 도입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준 보조율에 20%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물산업기술심사단 구성·운영 등(안 제9조)

- 우수제품등의 지정 및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 우수제품등 보급 지원(안 제10조)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물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우수제품등 우선 구매, 혁신형물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함

아. 시범사업 계획의 수립 및 추진(안 제11조)

- 물순환이용, 빗물재이용, 에너지자립, ICT 융복합 혁신기술 등 시범사업 대상기술과 추진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종료 후 1년 이내에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자. 창업 지원(안 제12조)

- 창업·경영 컨설팅, 물산업 관련 기술 이전, 물기술·제품 시장정보

- 제공, 마케팅 및 제품판로 개척 등 창업 지원 사항 등을 구체화함
- 차.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방법, 지정취소, 평가(안 제13조 ~ 제16조)
 -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지정 기준(별표 등),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구체화하고, 혁신형 물기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실적이 부실한 경우 지원 축소 및 중단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카.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선정 및 위탁(안 제17조 ~ 제18조)
 - 산업단지, 도시개발구역 등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입지 선정 대상 지역,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 등 입지선정 시 고려 사항, 입지선정 절차, 운영 위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타.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안 제19조)
 - 물관리기술 분야의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 등 실증화시설 및 집적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기술, 제품의 사업화와 보급 촉진을 위한 시책을 구체화함
- 파.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안 제20조)
 - 시·도지사의 물산업지원센터의 운영 위탁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하. 업무의 위탁(안 제21조)
 -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4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7. 23.
- 마감일자 : 2018. 9. 3.
- 물관리기술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기 위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654호, 2018.6.12. 공포, 2018.12.1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환경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 도입(안 제33조 제1항관련 별표2)

1) 1차 행정처분 : 시정명령, 2차 행정처분 : 지정 취소

45.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7. 23. ● 마감일자 : 2018. 9. 3.

○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
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한 내용으로 「관광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5058호, 2017. 11. 28. 공포, 2018. 11. 29. 시행)
됨에 따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지정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법 제6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조문을
정비함(안 제14조)

나. 관광편의시설업 중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의 지정기준에 ‘외국인
만을 대상으로 영업할 것’ 신설(안 제14조 관련 별표2 개정)

1) 외국인전용 유희음식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6호다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유희주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주류나 그 밖의 음식을 제공하고 노래와 춤을 감상하게 하거나
춤을 추게 하는 업’으로, 현행 지정기준은 시설에 대해서만 규정
하고 있어, 상위법령인 시행령에 맞게 지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4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7. 23. ● 마감일자 : 2018. 9. 3.

○ 실효적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사업자 등과 임직원을 구분하여
과태료의 상한을 규정하도록 하고,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97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행위 등을 한 임직원과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기준 근거 규정 개정(안 제14조)

- 1) 과태료 부과기준의 약관규제법 근거규정을,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으로 개정함

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별표)

- 1) 사업자와는 별도로, 조사 거부·방해 및 기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2)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 위반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 1차 위반은 50% 감경하고, 2차 이상 위반 시부터 100% 부과함

47.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7. 24.
- 마감일자 : 2018. 9. 3.

- 여행자 휴대품 중 전자담배에 대한 면세한도를 명확하게 하고, 내국인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 작성시 여권번호 기재 의무를 생략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관세청이 국세청으로부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내역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결제 의무사용 예외사유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생결제의 세부 규정 중 대통령령으로 위임 사항의 규정

1) 상생결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용예치계좌’를 현재 상생결제 운용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개설·운용하는 계좌로 규정

2)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수탁기업의 파산 등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구체화

3) 상생결제 비율산정, 제도운영 등에 필요한 고시 제정 근거 마련

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대상 확대 등 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

1) 현행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평가대상 공공기관을 평가대상 기관 선정의 유연성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고시토록 개정

다.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투명성 제고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1) 적합업종 전문가가 사업조정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위원 풀을 확대(12명 → 20명)

2) ' 17.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사업조정심의위원장 직위가 격상(차장 → 차관)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 직위도 과장급 →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

3) 조정심의회 위촉위원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재직 위원에 대한 로비 등 부패요인 제거

4) 위원의 제척 사유에 최근 3년 이내 심의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할 경우나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 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조정 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

5) 위원이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제척 위반 등으로 사업조정 심의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임기 만료 전 당연 해촉 사유 추가를 통해 이해충돌방지의 제도적 장치 마련

51.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청)

• 예고일자 : 2018. 7. 25.

• 마감일자 : 2018. 9. 3.

○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과목별 시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화재감식 평가기사와 산업기사를 포함시키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 ‘소화활동과 동시에’ 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 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나. 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 제1호, 제2호)

-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 를 ‘8주’ 로 단축

다.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항)

-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항 신설)

마.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52.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25.

• 마감일자 : 2018. 9. 5.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토록하며,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안 제11조, 제19조, 제35조)

-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결정 신고,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변경 신고, 행위신고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하고, 법령상 처리기간 내에 수리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나. 행위허가·신고 기준 중 ‘파손과 훼손’ 중복규정 의미 명확화(안 제35조)

- 지자체의 행위허가를 받거나 또는 지자체에 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이 되는 행위 중 파손 또는 훼손을 파손으로 통일하여 의미 중복에 따른 혼선을 해소하도록 함.

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7. 25.
- 마감일자 : 2018. 9. 3.

○ 통신판매업 신고 시 신고자 1인에 대한 정보는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전체 세대원정보가 기재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해왔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신판매업 신고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서식)

- 통신판매업 신고서 서식 상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 으로 개정함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하여 높아진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다 고취하려는 것임

나.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운영 주체 확대(안 제7조)

- 1)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주체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종합병원, 학교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음
- 2) 이에 종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의 사회적 저변을 확대하고, 시설 운영의 다양성을 추구하며, 아울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다.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안 제17조 제1항)

- 1) 현행법은 구조금 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등의 경우에 미숙한 금원 관리가 우려됨에도 구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
- 2) 이에 따라 구조금 분할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가 이를 적절하게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라. 장해·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안 제17조 제3항, 제4항)

- 1) 현행법은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을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해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지급 결정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 없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
- 2) 이에 장해 중상해 구조금 지급을 신청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을 보호하려는 것임

마.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를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안 제23조)

- 1) 현행법은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인 경우 상호보증에 있는 경우에만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함
- 2) 결혼이민자 역시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고, 그 가족도 범죄피해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겪는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결혼이민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특히 필요함

3) 이에 따라 구조금 지급 대상을 외국 국적의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고자 하며, 다만 그 범위를 체류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로 정하고자 함

바.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규정 마련(안 제29조의2)

1) 가해자 보유재산의 사실조회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여 조속히 가해자의 재산을 파악함으로써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려는 것임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7. 26.

• 마감일자 : 2018. 9. 4.

○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온실, 육묘 및 종묘 배양장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를 정하고, 주민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 등의 설치 주체를 확대하는 한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보급의 촉진 및 대기환경 보호를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에 입지하는 버스 차고지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 부대 시설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추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 요청 대상 기관 정비(안 제26조 제1항제1호)

- 산림보호법 제39조제1항제5호 개정으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기관에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공원사무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명시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안제32조의6제4항)

-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을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맞는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5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27. • 마감일자 : 2018. 8. 1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 대상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인권교육 대상 기관(안 제14조의2 신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권교육 대상기관으로 정함

6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7. 27. • 마감일자 : 2018. 8. 2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률 제15443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인권교육실시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인권교육의 대상·실시방법, 인권교육기관 지정, 행정처분의 기준 등(안 제27조의2 신설)
 - 1) 인권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실시방법·시간, 인권교육기관 지정, 인권교육기관의 취소·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그 외의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함